



농림축산식품부



53차 ADB 연차총회
5.2.-5.5.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시 검진 및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1.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제도(붙임 보도자료 참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관련 생산자단체에 위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불법체류 외국인 감염증 검진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6판)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식량정책과장, 식량산업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농협중앙회장(농가소득지원부장),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행정주사보 강은영 농업사무관 김일수 경영인력과장 전결 2020.3.9. 유원상

협조자

시행 경영인력과-1352 (2020. 3. 9.)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1596 팩스번호 044-868-7217 / key0920@korea.kr / 비공개(5)